

Ⅱ. 관련법령 동향 및 영향분석

1. 총괄

의무보험 영역 확대

- 자배법 - 대물배상 가입의무화 / 대인배상 I 보상한도인상
- 임시운행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
-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

보험규제 완화

- 보험업법 - 진입규제 완화
- 상품개발규제 완화
-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
-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(Cross selling)

소비자보호 강화

- 자배법 - 의무보험 자기부담금제 도입
- 가불금제도 강화
- 보험업법 - 의무가입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
- 공시제도 강화
- 기타 - 자동차보험 서비스 표준화

보상기준 정비

- 자배법 - 정비수가 표준화
- 진료수가기준 정비

기타 동향

- 2004년도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 추진
-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정
- 국민건강보험법상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
-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

2. 요소별 동향 및 영향분석

가. 의무보험 영역 확대

주요내용	관계법령(근거)	시행일자
▶ 대물배상 가입의무화 ○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	자배법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	'05.2.22
▶ 대인배상 I 보상한도 인상 ○ 사망 1억원, 부상 1급 2천만원	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	
▶ 임시운행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○ 임시운행허가시 보험가입확인 의무화	자배법 제34조	'03.8.21
▶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 ○ 가입관리전산망 운영규정 정비 ○ 미가입차량 과태료 인상	자배법 제6조의2, 제37조 동법시행령 별표5	'04.2.22 '04.8.22

대물배상 가입 의무화

- '05. 2. 22일부터 사고 1건당 1천만원 이내에서 실손해액을 배상하는 대물배상보험 가입의무화
- 기존 대물배상 상품구조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

대인배상 I 보상한도 인상

- '05. 2. 22일부터 사망 및 장해 1급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 부상 1급 피해자는 1.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

임시운행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

- '03. 8.21일부터 임시운행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화

- 이에 따라 일부 손보사는 취급업자보험의 특약으로 임시은행담보 상품(차량구매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함) 개발·판매

□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

- 전산망을 통한 미가입자추출과 보장사업분담금을 통한 운영경비지원 및 전산망 운영의 보험개발원 위탁관리를 자배법에 규정('04. 2월)
- 13,500여대에 달하는 미군사유차량에 대한 가입사실 확인 및 미가입 관리업무 시행 예정(정부 제10차 SOFA특별대책반 회의,'03. 4.25)
-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
 - 대인배상 I : 이륜차 및 비사업용자동차 2배 인상('04. 8.22 시행)
 - 대물배상 :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금액('05. 2.22 시행)

◎ 영향 및 과제

개정내용	영 향	과 제
대물배상 가입의무화 대인 I 보상한도인상	○ 수입보험료 2.3% 증가 (대물 1,400억원, 대인 300억원) ○ 타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전망	○ 대물 의무보험의 손해율 관리 강화 필요 ○ 요율산출작업 기 완료·반영
임시은행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	○ 수입보험료 약 50억원 증가	○ 의무가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 철저
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	○ 전산망 비용 확보로 안정적 업무 운영 및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○ 미군사유차량의 보험가입율 제고	○ 외화표시보험 정비 필요 ○ 미군사유차량의 국내 손보사 가입 유도 필요

주 1. 대물배상 가입의무화·대인배상 I 보상한도 인상효과는 '02.10~'03. 9 자료사용
 2. 임시은행자동차 보험가입의무화 효과는 FY'02년 차량증가 실적 기준으로 산출

나. 보험규제 완화

주요내용	관계법령(근거)	시행일자
<p>▶ 진입규제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설정 : 일반 보험회사의 2/3(200억원) ○ 일부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최저자본금의 보험종목별 세분화 및 인하 	<p>보험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</p>	
<p>▶ 상품개발규제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후 15일 이내 금감위 보고를 판매후 분기별 제출로 완화하여 보험회사 자율권 강화 ○ 다만, 계약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금감위가 청문을 거쳐 내용변경 또는 판매중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회 이상 금감위의 시정조치받은 보험회사에 과태료 부과,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문책 	<p>보험업법 제127조, 128조</p>	<p>'03.8.30</p>
<p>▶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자동차보험 판매는 '05. 4월부터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5. 4월~ : 개인용 자동차보험 - '07. 4월~ : 자동차보험 전체 ○ 금융기관 점포내(In-bound)에서만 판매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문판매, 전화, 우편, E-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 	<p>보험업법 제91조 동법시행령 제40조</p>	<p>'05.4. 1</p>
<p>▶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설계사의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제3보험간 교차모집 허용 	<p>보험업법 제8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9조</p>	<p>'06.5.30</p>

◎ 영향 및 과제

개정내용	영향	과제
진입규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/단종 보험회사의 출현으로 치열한 시장경쟁 예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보호를 위해 지급준비금 적립률 및 재무건전성 강화
상품개발규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신상품의 적시 개발·판매 가능 ○ 상품개발에 관한 손보사 자율권 및 책임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험통계 집적 강화를 통한 상품개발 인프라 확충 ○ 각 손보사별 경험실적을 반영한 예정기초율 계산 필요
자동차보험 방키슈랑스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손보사별 경쟁구도 변화 예상 ○ 은행권의 손보사에 대한 영향력 증가 ○ 은행과 제휴부진시 영업력 위축 예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시장창출 등 방키슈랑스 도입목적에 부응하는 Win-Win 전략 추진 필요 ○ 판매제휴시 손보사의 주도권 확보 방안 마련 ○ 제휴진전단계별 대응방안 마련
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집경쟁격화 및 계열사 없는 손보사의 타격 예상 ○ 회사별 브랜드가치의 중요성 심화 ○ 판매조직의 회사 소속력 약화 ○ 고능력설계사의 수입증대 및 판매 능력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양극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열사 없는 손보사의 생보사 제휴방안 모색 ○ 설계사조직 활성화 및 회사 소속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수단체계 개선 ○ 회사별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

다. 소비자보호 강화

주요 내용	관계법령(근거)	시행일자
▶ 의무보험 자기부담금제 도입 ○ 음주·무면허운전사고시 대인 200만원, 대물 50만원 이내	자배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	'04.8.22
▶ 가불금제도 강화 ○ 가불금청구시 10일 이내에 지급 ○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 부과	자배법 제10조제2항·제5항, 제40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	'04.2.22
▶ 의무가입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○ 손보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불충분한 제3자의 신체손해 지급보장 ○ 자동차보험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인 I 및 대인 II의 80%(1억원 한도)를 지급보장	보험업법 제165조~제174조 동법시행령 제80조~제82조	'03.8.29
▶ 공시제도 강화 ○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운영 ○ 불성실·허위공시 보험회사에 과태료부과	보험업법 제124조제2항	'03.8.29
▶ 자동차보험 서비스 표준화 ○ 자동차보험 서비스(계약서비스, 보상서비스, 기반구조)에 대한 한국산업규격(KS) 획득 ○ 서비스 표준화 평가기준 작성 후 시행예정	규격번호 KSA0931~0933 ('03.2.19)	'05.하반기 예정

의무보험 자기부담금제 도입

- 자배법 개정전에는 임의보험에서만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였으나
- 의무보험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자기부담금액을 사후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

□ 가불금제도 강화

- 피해자가 가불금청구시 보험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지급 의무
- 가불금을 기한 내에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
-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 보상청구요건 엄격

□ 의무가입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

- 손보사 파산시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입은 손해액이 예금자보호법상 1인당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보사가 기금을 출연, 지급보장
 -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급불능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대인 I 보장한도액 및 대인 II의 80%(1억원 한도)

□ 공시제도 강화

-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의무 명문화
 - 협회 내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을 비교·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 지원
 - 공시의무 위반시 및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

□ 자동차보험 서비스 표준화

- '03. 2월 자동차보험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규격(KS) 획득
 -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계약서비스·보상서비스·기반구조로 구성
 - 보험서비스 구조의 체계성 확립 및 서비스 질의 향상 유도
- '04. 하반기 서비스평가기준 마련(산업자원부) 후 '05년 이후 시행예정

◎ 영향 및 과제

개정내용	영향	과제
<p>의무보험 자기부담금제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보험금 330억원 감소 예상 - 대인 I : 640억원 감소(△2.4%) - 대인 II : 310억원 증가(2.3%) - 대물사고는 현행과 같이 면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기부담금제 적용 범위 확대 ○ 무면허 대물사고 면책규정에 대한 재검토
<p>가불금제도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불금 지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부담 등 손보사의 부담 가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불금지급 제외기준마련 필요 ○ 가불금청구시 10일내 지급을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
<p>의무가입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손보사 파산시 업계는 파산 손보사 연간 수입보험료의 약 5%를 부담 ○ 지급여력비율에 관한 감독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준비금 적립 충실화 및 적정 수준의 지급여력 확보 ○ 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적절한 가격경쟁 지양
<p>공시제도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지원 ○ 손보사별 경쟁의 투명성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품특화 전략 수립·추진
<p>자동차보험 서비스 표준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, 경쟁력 강화 ○ 분쟁예방 및 해결기준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준규격에 부합되도록 서비스 기반 확충 ○ 대외 신인도제고를 위한 서비스 인증 준비

주 : 의무보험 자기부담금제 도입효과는 '01.10~'03. 9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

라. 보상기준 정비

주요 내용	관계법령(근거)	시행일자
▶ 정비수가 표준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비요금 조사·연구결과 공표 ○ 조사·연구 수탁기관 선정(건교부) 	자배법 제13조의2	'04. 8.22
▶ 진료수가기준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재보험수준의 자보가산율 적용 ○ 선택진료료 인정기준 명시 등 	자배법시행규칙 제5조	'04. 8.22 '03.10. 8

□ 정비수가 표준화

-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·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
- 조사·연구 수탁기관 선정(건교부, '04. 4.28)
 - 보험개발원 및 여주대(표준작업시간), 한국산업관계연구원(공임)

□ 진료수가기준 정비

- 자보 진료수가 가산율의 단계적 하향조정
 -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'95. 6월 책정되었던 자보 진료수가 가산율이 '03. 10월부터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시·적용

< 연도별 자보가산율 비교 >

구분	1995. 6	1999.10	2001.10	2003.10 이후
종합전문	160%	100%	66%	45%
종합병원	109%	72%	50%	37%
병원	38%	29%	23%	21%
의원	25%	22%	17%	15%

- 선택진료료 인정기준 명시
 - 심의회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기준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명시
-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기준 정비
 - 심의회의 구성과 업무, 운영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규정
 - 공익대표 위원에 사고피해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 제고

◎ 영향 및 과제

개정내용	영 향	과 제
정비수가 표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○ 보험·정비업계간 불필요한 분쟁 감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형화된 작업방법과 절차 등 표준조건 설정 및 표준작업시간의 정착 ○ 공임의 경우 시장자율기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
진료수가기준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재보험수준의 가산율 적용으로 자보 가산율 수준 일부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약 190억원의 진료비 감소 예상 ○ 선택진료료 지급보험금 증가가 예상되거나 지급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감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수가와 일원화 추진

주 : 자보 가산율 하향조정 효과는 FY'02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

마. 기타 동향

주요내용	관계법령(근거)	시행일자
<p>▶ 2004년도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·차명모델별 요율 차등화 ○ 할인할증제도 개선 등 ○ 공청회 개최 예정('04. 5.25) 		
<p>▶ 표준손해액 제공시기 단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공시기 2월말로 단축 및 금감원 보고 ○ 종결처리기간 및 물가상승을 반영 	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-11, 제4-12조	'04. 2
<p>▶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사고감소강화/대중교통수단의 안전도 제고 ○ 신규과제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별·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- 교통사고자료 공유·활용 체계 구축 등 	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(건교부)	'03.11 수정발표
<p>▶ 국민건강보험법상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리공단 등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의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 	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	'03.7.29
<p>▶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가입범위 확대 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	'05.1.1
<p>▶ 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4.2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등 대리운전자제도 법제화 검토 	-	
<p>▶ 화물운송사업 허가요건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○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 	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, 제21조, 제8조의3~제8조의5	'04.12.31
<p>▶ 정년연장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부는 '08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계획 ○ 자배법상 봉급생활자 및 농어민등에 대한 정년 인정기준 신설을 추진한 바 있음 	-	'08년 이후

◎ 영향 및 과제

개정내용	영 향	과 제
2004년도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○ 보험사고율 감소 및 손해율 개선 ○ 지자체의 교통여건개선 및 사고감소유도 ○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차량설계 개선유도로 수리성/손상성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
표준손해액 제공시기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공시기 단축으로 자료의 시의성 제고 ○ 추산보험금 적립의 적정성 확보 	
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 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 예상 ○ 교통사고자료 공유·활용체계 구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제고 - 체계적인 교통안전계획 점검 및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손보업계의 적극적 지원
국민건강보험법상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보험급여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 ○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호호혜원칙 상실로 사회적 공평성 훼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보험·건강보험 간 상호 자료교환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
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상 재해사고는 대인배상Ⅱ에서 면책이므로 손해율 일부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의무보험과 산재보험간 관계정립필요
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의무화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가입 의무화시 보험계약자 및 사고피해자 보호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리운전자의 엄격한 자격기준 필요
화물운송사업 허가요건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요건 강화로 화물자동차 사고율 감소 예상 	
정년연장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률상 정년연장시 현실소득인정으로 상실수익액·휴업손해액 증가 ○ 자매법상 농·어업인 정년 65세 연장시 대인보험금 0.6% 증가예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 시행시 요율조정 등 필요